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19
----------	---------

제출년월일: 2019년 4월 일

발의자: 윤유선, 정정희, 박성호, 김현희  
황영호, 김동협, 신낙형, 이의걸  
박주선, 김성한, 강선영, 경기문  
이충현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안 제2조, 제4조)

나. 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매실적의 공표 (안 제5조~ 제7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안 제9조)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안 제10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안 제13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 (안 제1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2)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의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일자리정책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4. 8. ~ 4. 15. ) 결과: 의견 없음

2) 전 문: 붙임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규정, 구매실적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 계 법 령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